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모집 수정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운영기관협의회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규모) 526억원

(사업내용) 수요기업이 지원분야별 수행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컨설팅(탄소수준진단) 필수 신청 + 기술지원 선택지원(마케팅 지원 불가)

지원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스마트공장전략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융·복합 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마케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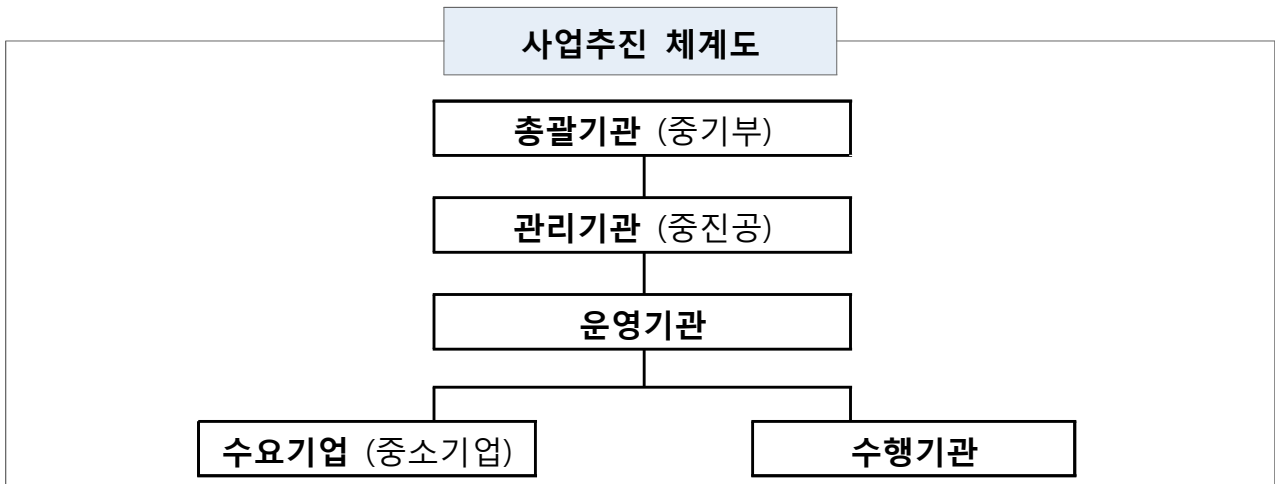
구분		운영기관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스마트공장전략, 규제대응, 산업안전, 용/복합컨설팅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기술전략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기술지원		(사)한국산학연합회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2. 추진근거 및 체계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 (추진체계)



3. 수행기관 자격

(역할 정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바우처를 발급 받은 수요기업의 메뉴판 구매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 (신청자격)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컨설팅 분야는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인 경우 신청 가능,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 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제외대상) 아래의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 중인 기업 및 기관
- ◆ 휴·폐업 기업 및 기관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 및 기관
-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및 기관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법인 및 대표자)
-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및 기관
- ◆ 신청한 분야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4. 수행기관 신청

□ (신청분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5개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6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탄소수준진단, 저탄소공정운영전략,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전략, 탄소대응조직 역량강화	20
	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15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일반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탄소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을 활용한 제작 지원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일반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
		탄소	전력 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일반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규격 인증	일반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탄소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제품 시험	일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0
		탄소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설계	일반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10
탄소		신제조공정, 차세대 동력장치, 친환경 발전, 에너지 저장 및 효율 향상, 환경개선 등 탄소절감을 구상하는 설계 지원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 홍보지원		20

* 재기컨설팅의 경우, 별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발

** 한도는 수요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의 한도를 의미하며, 수요기업별 지원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 한도의 최대 2배까지 서비스 계약체결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 활용(www.mssmiv.com)

☞ 신청방법 : www.mssmiv.com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행기관 신청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수행기관 신청 접수

☞ 반드시 "신청" 버튼 클릭 후 신청결과 최종 확인 요망(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 번호가 있더라도 임시저장 상태일 경우에는 평가 불가)

□ (신청기간) 정기 및 수시모집

구분	방법	신청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마케팅	(종료) (1차) `21. 4. 28(수) ~ 5.14(금)
		(2차) `21. 7. 20(화) ~ 8. 13(금)
		(3차) `21. 10. 4(월) ~ 11.3(수)
수시모집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21. 7. 20(화) ~ 별도 안내 시까지
	기술지원	`21. 4. 28(수) ~ 별도 안내 시까지

* 정기모집 외 각 운영기관에서 필요 시 프로그램 단위별 추가모집 가능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에 제출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수행기관 신청서	온라인 신청	
	- 동일분야 프로그램 중복 신청 시, 신청 프로그램 모두 선택		
②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계획	○	
	- 프로그램 중복 신청 시, 각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제출		
③	수행기관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수행기관 신청 전에 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에 한하여 인정 - 학력 및 전문자격의 경우, 개인별 학위(졸업)증명서 및 전문자격증 사본 제출		
④	보안각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수행인력)	○	
	- 수행인력 전원 서명 및 서류 첨부 - 정보제공동의서 : 수행인력별 개별 서류 작성 및 첨부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⑤	윤리강령 서약서 - 온라인 서약 실시	온라인 서약	
⑥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 - 온라인 동의 실시(공인인증서) - 신용정보조회 등 선정평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작성(온라인 입력) - 공동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서류 작성 및 개별 첨부	온라인 동의	
⑦	사업실적증명서 - 신청일 포함 최근 3년 내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실적증명서(별지3호) 양식에 맞게 제출된 건에 한하여 인정(직인 필수) - 프로그램 중복 신청의 경우 사업실적증명서의 지원프로그램 미표기 시 인정 불가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동시 제출 시 지원프로그램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제출	○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항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은 신청자격이 제한됨	○	
⑩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표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필수	○	
⑪	참여인력 경력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수행기관 신청 전에 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에 한하여 인정 -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⑫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기재되지 않은 서류 불인정) -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일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인정	○	
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추천서 - 지방청 추천업체에 한하여 제출. 지방청 추천의 경우, 추천서 상 프로그램 및 관할 지역에 한하여 수행 가능함		○

* 연번⑥의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인 및 날인된 원본을 분야별 운영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 필수(多분야 신청 시 각각 제출 必)

** (붙임1) 수행기관 신청서류 누락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 단, 신청자격 확인서류(연번 ④~⑨) 미제출시 신청 및 선정 불가

5. 수행기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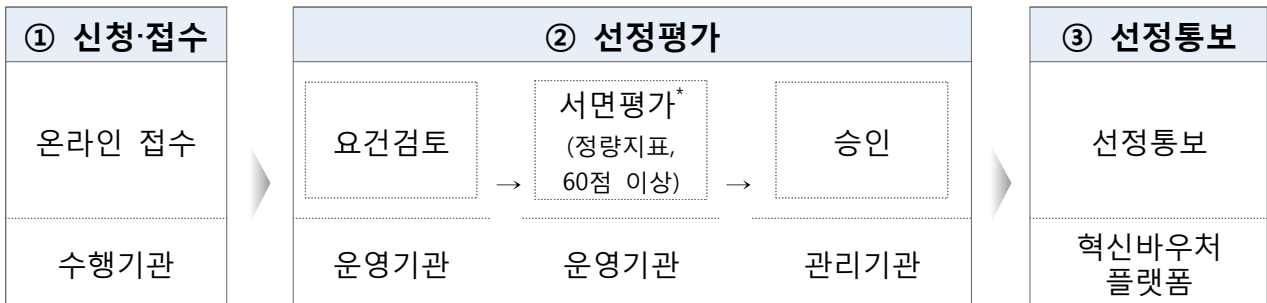
□ (평가기간) 정기모집 및 수시모집으로 구분

구분	방법	평가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마케팅	(종료)
		(2차) ~ 8. 31(화)
		(3차) ~ 11. 19(금)
수시모집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소요*
	기술지원	

□ (평가항목)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전문성, 수행역량)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조직규모, 재정안정성) 등 선정지표로 구성

* (붙임2) 수행기관 선정지표 및 배점기준 자료 참조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 지방청 추천 기관의 경우 서면평가 생략(별도 요건 및 절차를 통해 추천)

** 수행기관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플랫폼 내 메뉴판 서비스 등록(필수)

6.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개별 접수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경우 개별신청서 작성 및 지원 필요
- ② 동일 분야 내 여러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통합지원 가능, 단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실적, 참여인력 관련서류 개별 작성필요

- ③ 수행기관 신청(프로그램 선택) 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 프로그램은 평가 및 등록 불가능
- ④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총 15개, 재기컨설팅 제외)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 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 ⑤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 ⑥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되어 선정불가
- ⑦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중 허위기재 확인 또는 서비스 결과물 검증 및 수행기관 실사를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과금* 발생 가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⑧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수행기관의 참여제한 가능
- ⑨ '20년 선정 수행기관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행기관 자격이 유지되며 서비스 수행 가능
 - * “마케팅 및 시장조사” 수행기관 → “경영/기술전략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이관
- ⑩ 탄소중립 경영혁신프로그램 수행기관의 경우, 반드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수행실적을 1건 이상을 보유해야 함
 - * 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기업은 지정서 제출 시 평가 생략
- ** 환경컨설팅회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2조 8항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제32조
- ⑪ 기술지원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수행기관의 경우, 반드시 녹색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구축, 친환경 인증 및 에너지시험, 탄소절감 설계

등 관련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해야 함

프로그램	수행실적 인정범위
시제품제작	(녹색기술) 친환경 연료유, 폐기물, 폐수 등 재활용을 통한 제품 생산 등
시스템 및 시설구축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구축) 효율향상설비 S/W 및 H/W 구축비 포함(붙임3 참조)
규격인증	(친환경 인증) 녹색인증, 탄소발자국인증, 저탄소제품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고효율인증, ISO14001, ISO14010(Series), ISO14020(Series), ISO14030(Series), ISO50001 등
제품시험	(친환경 에너지시험)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통에너지원 효율화, 신에너지원(핵융합 등) 관련 시험 등
설계	(탄소절감 설계) 신제조공정, 차세대 동력장치 및 친환경 발전의 설계, 환경개선 장치 설계 등

⑫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7. 문의 및 확인

구분	운영기관 및 담당부서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탄소중립경영혁신/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산업안전/융복합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내곡드림시티 5층 02-569-8122
	경영기술전략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컨설팅2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동성빌딩 9층 070-7404-8481
기술지원	(사)한국산학연합회 (협력사업팀)	세종시 집현중앙7로 6, 세종지식산업센터 B동 4층 042-720-3332~4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컨설팅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도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10층 02-6678-9332, 9334~7	

붙임 1**수행기관 신청서류(운영지침 별지 제9호~제14호)**

[제출서류 ①] 수행기관 신청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온라인)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지 역		설 립 일 자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휴 대 전 화
	팩 스		이 메 일
담 당 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기업 현황	종 업 원 수 (4대보험 가입자)	참 여 인 력 수 (인)
	자 산 총 계 (백만원)	매 출 액 (백 만 원)
	자 본 총 계 (백만원)	당 기 순 이 익 (백만원)
	부 채 총 계 (백만원)	부 채 비 율 (%)

지원 분야 및 프로 그램	컨 설 팅	<input type="checkbox"/> 탄소중립경영혁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공장전략	<input type="checkbox"/> 경영기술전략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응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	<input type="checkbox"/> 융·복합
	기 술 지 원	<input type="checkbox"/> 시제품 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및 시설 구축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 및 지재권획득
		<input type="checkbox"/> 규격 인증	<input type="checkbox"/> 제품시험	<input type="checkbox"/> 설계
마 케 팅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개선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지원	<input type="checkbox"/> 홍보 지원	

위와 같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상기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과제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21년 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

(인)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4. 수행예정 서비스별 수행계획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7. 보안각서 및 수행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8. 정보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제출서류 ②]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계획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계획

※ 수행서비스별 개별 작성

주서비스 수행계획

서비스 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수행 단 가			
예상수행기간			

유사서비스 수행실적(최근 3개년 / 주요 실적 : 건, 원)

업체명	기간	수행내용	수행금액	비고
	yy.mm.dd~yy.mm.dd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참여인력 현황(각 인력별 참여인력 이력사항 작성필요(첨부2))

성명	직급	전문분야	최종학위/자격증	경력

[제출서류 ③] 수행기관 참여인력 이력사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비스 수행인력 전체 개별 작성

사 진	성 명		직 위 (직 책)	
	수 행 예 정 프 로 그 램		역 할 (담 당 업 무)	
	주 소			
	E - M a i l		휴 대 폰	

	기 간	학교명	학과명	전 공	학 위
학력사항 (고등학교 이상 학력작성)	`00.00.00~`00.00.00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경력 (최근 경력부터 작성)	`00.00.00~`00.00.00				

	기 간	업체명	수행내용	수행금액	비고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00.00.00~`00.00.00				

	발급일자	자격증명	발급번호	발급기관	비 고
자격증	`00.00.00~`00.00.00				

* 경력지수의 인정은 수행기관 신청 전에 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 직원에 한하며, 개인별 학위 (졸업)증명서 및 전문자격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 및 학력이 확인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서류 ④] 보안각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수행인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보안각서(수행기관)

수행인력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	서 명

상기자는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동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수행기관 :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수행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록,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전문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참여이력(사업년도, 표준산업분류, 참여기간, 참여내용(수행과제정보), 성과이력(사업년도, 사업구분, 평가일, 평가등급, 경력사항(학력사항, 근무경력, 자격증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및 주관기관,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중소기업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전문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참여이력(사업년도, 표준산업분류, 참여기간, 참여내용(수행과제정보), 성과이력(사업년도, 사업구분, 평가일, 평가등급, 경력사항(학력사항, 근무경력, 자격증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한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동의자 성명 : (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당사는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동 사업의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수행기관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2021년 00월 00일

수행기관 : (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 본인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등록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서비스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수행분야, 수행실적, 수행 후 등급평가결과, 참여제재결과 등)를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기 업 체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히 숙지함은 물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중

본인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분야별 운영기관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 (http://www.kosmes.or.kr),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mssmiv.com) 및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무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 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 목적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를 위한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창투자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용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용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며,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1년 00월 00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히 숙지함은 물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중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련 상담,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기업진단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제공·조회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기관, 중소기업부 등록 창투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기업진단.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용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운영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 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및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1년 00월 00일

기업체명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010-0000-0000
대표자주민번호	이메일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실적증명서

관련실적 해당분야 (중복가능)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탄소중립경영혁신	<input type="checkbox"/> 경영기술전략	<input type="checkbox"/> 스마트공장추진전략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응	<input type="checkbox"/> 융복합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	
	기술지원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및 시설구축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 및 지재권획득	
		<input type="checkbox"/> 탄소	<input type="checkbox"/> 규격인증	<input type="checkbox"/> 제품시험	<input type="checkbox"/> 설계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개선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지원	<input type="checkbox"/> 홍보지원		
신 청 인 (수행기관)	기 업 명 : _____ (인) (전화번호 : _____)					
	영업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용역) 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명					
	사업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증 명 서 발급 기업/기관	기 업 명 : _____ (인) (전화번호 : _____)					
	주 소 : _____ (FAX : _____)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1.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시 함께 인정						
2. 사업(용역)이행실적은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실적증명서의 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신청인의 날인이 편집/조작된 경우 사업실적으로 불인정하며, 허위로 실적을 제출 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참가자격을 제한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표

□ 신규 수행기관 선정기준(합계 60점 이상 득점時 절대평가로 선정)

구분	요소	세부 평가항목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 요약	배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70)	전문성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 상근인력만 인정 * 증빙서류 : 참여인력의 해당되는 경력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재직(퇴직·경력) 증명) 서비스수행계획, 참여인력이력사항	20	70
	수행 역량	관련분야 업력	* 증빙서류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20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 제출서류 : 서비스 수행계획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15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제출서류 : 서비스 수행계획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15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30)	조직 규모	인력 규모	* 상근인력만 인정 *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5	30
	재정 안정성	매출액	* 제출서류 : 결산공고된 국세청 표준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5	
정부 정책의 부합성 (-10)	부정 행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재이력	*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10	감점 지표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최하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 온라인 동의를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직인 및 날인된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본을 반드시 분야별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우편 송부)으로 제출하여야 함(多분야 신청 시 각각 제출 必, 주소는 모집공고 참조)

□ 지표별 평가서류 및 평점기준

평가관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배점	20점
평가지표	인력의 전문성		
지표의미	·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각 프로그램별 수행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20점

※ 측정산식

① 참여인력 경력지수란, 본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참여인력의 경력을 지수화한 것을 의미하며, 전체 참여인력의 경력지수 합계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참여인력 경력지수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관련된 경력에 한하며, 하단의 표를 기준으로 함

자격조건	경력지수
-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4년 이상	3
-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및 해당분야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 취득자	2
- 해당분야경력 3년 이상	1

* 경력지수의 인정은 수행기관 신청 전에 신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에게 한하며, **개인별 신청일(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을 포함·제출하여** 경력 및 학력이 확인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위(졸업)증명서', '전문자격증'은 사본으로 확인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1) 개인별 학위(졸업)증명서** 또는 '**전문자격증**'과 함께 **2)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첨부 필요)

* 다만,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발급이 어려운 참여인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공공기관 등 공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문자격은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기능장, 경영기술지도사**에 한함

* '학위(졸업)증명서'는 내용 중 '성명', '생년월일', '소속(대학, 학과, 부 등)', 학위명, 졸업일/학위수여일, 학위등록번호, 발급기관 날인이 확인가능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또한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사본에 대학명, 학위 및 전공내역, 발급일, 발급기관명 등 중요 확인내용이 있어야 하며, **영어 외 언어일 경우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할 시에만 인정**

※ 평점 부여기준

신청기관에서 본 사업에 투입하는 참여인력의 경력지수를 합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구분	6 미만	6 이상 ~ 9 미만	9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5 미만	15 이상
배점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평가관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배점	50점
평가지표	수행역량		
지표의미	·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기관이 프로그램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관련분야 업력	20점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15점
③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15점

※ 측정산식

① [관련분야 업력 = 관련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의 경과 연수]

- * 관련분야 업력은 '관련 업태 및 종목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경과한 기간을 통해 산정함.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타 서류첨부 란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칸에 제출 시 인정
-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기타'란에 1)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두 제출 시 인정)

②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의 합]

- *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건수를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건수의 합으로 산정함.
- *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인정 기준은 1)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실적증명서' 양식에 맞게 제출되어 확인 가능하며 양 계약 당사자의 직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또는 2)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반드시 QR코드 포함된 발급분만)에 한하여 인정함.
- *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3)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증빙 서류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함.(단, 계약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만 인정)

구분	필수 기재 항목
수행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날인
사업(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실적 대상 기관(기업)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제출 가능한 기업 설립 이후의 실적건수 합으로 계산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시 인정(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일 시 '기타'란에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시 인정)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협업컨설팅을 통해 해당 협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에서 최근 3년간('18, '19, '20) 실적 확인)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의거하여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기관/기업은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부여)

③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의 합]

- *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금액을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금액의 합으로 산정함.
- * 유사과제 수행실적의 인정 기준은 1)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실적증명서' 양식에 맞게 제출되어 확인 가능하며 양 계약 당사자의 직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또는 2) 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QR코드 포함)에 한하여 인정함
- *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3)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 아래 확인항목이 포함된 증빙서류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함. **(단, 계약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해야만 인정)**

구분	필수기재항목
수행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날인
사업(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실적 대상 기관(기업)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 업력이 3년 미만의 경우, 제출 가능한 기업 설립 이후의 실적건수 합으로 계산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 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국세청)' 제출시 인정(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일 시 '기타'란에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및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시 인정)
- * 융/복합컨설팅 : 협업컨설팅을 통해 해당 협업체가 중소기업부 협업승인 완료된 건에 한하 실적 인정(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에서 최근 3년간('18, '19, '20) 실적 확인)
-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의거하여 산업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받은 기관/기업은 유사과제 수행실적, 수행금액 서류 생략 가능(최고점부여)

※ 평점 부여기준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관련 분야 업력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배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컨설팅, 마케팅분야

유사과제 수행실적	6건 미만	6건 이상 ~ 9건 미만	9건 이상 ~ 12건 미만	12건 이상 ~ 15건 미만	15건 이상
유사과제 수행금액	1억 미만	1억 이상 ~ 1.5억 미만	1.5억 이상 ~ 2.5억 미만	2.5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배점	3점	6점	9점	12점	15점

*기술지원분야

유사과제 수행실적	1건 미만	1건 이상 ~ 5건 미만	5건 이상 ~ 10건 미만	10건 이상 ~ 15건 미만	15건 이상
유사과제 수행금액	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 ~ 4억 미만	4억 이상
배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 * 유사수행실적은 별지 제1호 서비스수행계획과 사업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금액을 인정함
-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지원 시 유사수행실적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별 중복 인정 가능(단 유사 수행내용을 포함하여야함)하며, **지원프로그램 미표기 시 인정 불가**

평가관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배점	15점			
평가지표	인력규모					
지표의미	· 인력규모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기관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조직규모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인력 규모	15점			
※ 측정산식						
① [인력규모 = 수행업체의 상근인력 수]						
* 인력규모는 수행기관의 상근인력 수를 의미함.						
* 인력규모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인력의 수로 산정하며, 신청일(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한하여 인정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기재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불가)						
* 단,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일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인정 (A01코드의 인원으로 평점 부여)						
평점 부여기준						
인력규모를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인력규모	6명 미만	6명 이상 ~ 9명 미만	9명 이상 ~ 12명 미만	12명 이상 ~ 15명 미만	15명 이상
	배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평가관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배점	15점		
평가지표	재정 안정성				
지표의미	· 매출액,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확인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재정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세부 배점		
	①	매출액	15점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1년 또는 2년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3년 이내 법인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 (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제출 필요)					

※ 측정산식

- * '21년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최근 3년('18-'20년)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단 개인기업의 경우, '20년 결산이전(5월)까지는 ('17-'19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의 경우 발급가능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시 인정
- * 첨부 증빙 미제출(누락) 연도의 경우, 매출액은 '0'으로 산정되며 유동비율, 부채비율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여 최하점 부여
- * 간편장부대상자 및 비영리법인 등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일 경우, 또는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등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은 가능하나 평가항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 제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공문을 함께 2) 회계사 확인 재무제표(원본대조필, 회계사 도장, 간인 모두 포함)** 제출 시 인정

①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 최근 3년('18-'20년 또는 '17-'19년) 매출액 평균을 통해 산정하며, 매출액은 결산공고된 국세청(홈택스) 표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된 값에 한하여 인정함

※ 평점 부여기준

매출액,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매출액	1억 미만	1억 이상 ~ 3억 미만	3억 이상 ~ 9억 미만	9억 이상 ~ 15억 미만	15억 이상
배점	6점	8점	10점	12점	15점

평가관점	정부정책의 부합성	감점 범위	-10 점
평가지표	부정행위		
지표의미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부여함.		
분석방법	제출자료에 따른 정량 평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내용	감점 범위
①	동사업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기업	-10점

※ 세부내용

① [부정행위 제재조치 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10점을 부여함.**
- * 징계수위와 무관하게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10점을 부여함.

대상설비	적용범위	비고
공기압축기	<p>압축비가 1.3 초과, 토출 압력이 30~1,000kPa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p> <p>*왕복동식: 전동기출력 2.2kW 이상 ~ 15 kW 이하</p> <p>*스크류식: 전동기 출력 15kW 초과~110kW 이하</p>	<p>효율관리기자재</p> <p>변속형만 지원</p> <p>(정속형 지원대상 제외)</p>
터보압축기	<p>압력비 1.3초과 또는 송출압력 30kPa 초과인 전동기 구동방식</p>	<p>고효율E인증기자재</p> <p>유량별 종합효율</p> <p>(64%이상~73%이상)</p>
원심식 송풍기	<p>압력비 1.3미만 또는 송출압력 30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 160mm~1,800mm)</p>	<p>고효율E인증기자재</p> <p>호칭별 전압효율</p> <p>(43.5%이상~81%이상)</p>
펌프	<p>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p> <p>*A효율(Maximum efficiency): 가장 높은 효율</p> <p>*B효율(Guaranteed efficiency): 제작자 보증 효율</p>	<p>고효율E인증기자재</p> <p>지상용, 수중용</p> <p>해당 토출량 A효율 이상, 규정 토출량 범위 B효율 이상</p>
삼상 유도전동기	<p>정격출력 5.5kW이상 375kW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 농형)</p>	<p>효율관리기자재</p> <p>출력별(5.5kW 이상~375kW 이하)</p> <p>효율기준 이상</p>
인버터	<p>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에너지절감 가변속 운전이 가능한 최대용량 220kW 이하</p>	<p>고효율E인증기자재</p> <p>효율 96%이상(7.5kW 이하), 97%이상(그 외)</p>
향온형습기	<p>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30,100kcal/h) 이하</p>	<p>고효율E인증기자재</p> <p>냉방EER(2.3~3.2 이상)</p> <p>난방COP(0.97 이상) 등</p>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p>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기 또는,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p>	<p>효율관리기자재</p> <p>효율등급 1등급 이상</p>
전기냉난방기	<p>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이하, 전열장치가 포함된 경우 전열장치 정격소비전력이 30kW이하인 전기히트펌프로 정격냉방능력 23kW미만</p>	<p>효율관리기자재</p> <p>효율등급 1등급 이상</p>

대상설비	적용범위	비고
전기냉방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이하, 정격냉방능력 정격냉방능력 23kW미만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등급 1등급 이상
스크류 냉동기	정격냉동능력 1,758kW(500USRT) 이하 에너지효율: 정격냉동소비전력(kW) ÷ 정격냉동능력(USRT)	고효율E인증기자재 에너지효율(kW/USRT) 0.7이하
원심식 냉동기	정격냉동능력 7,032kW(2,000USRT) 이하 COP: 단위 표준냉동소비전력당 표준냉동능력 (kW/kW)	효율관리기자재 COP 5.02 이상(1,055kW 이하), COP 5.41 이상(그 외)
상업용 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300~2,000L),냉장진열대(300~1,500L)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등급 1등급 이상
스마트LED 조명시스템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동작감지, 조도감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복합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고효율E인증기자재 (LED램프/등기구 고효율인증제품 적용)

* 효율관리기자재 중 동급용량의 1등급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등록제품 중 가장 높은 등급설비 인정

** 시스템 및 시설구축 프로그램의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구축은 상기표의 범위에 한하여 지원 가능